

2004. 4. 16 제정

2026. 3. 18 개정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삼 성 전 자 주 식 회 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일층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 제28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 설치하기로 하고 그 구성,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 성

제2조 (구성)

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총수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

제4조 (해임)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하며, 이사회는 해임,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충원을 해야 한다.

제3장 운 영

제5조 (위원회)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소집절차)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7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권한 및 책임

제8조 (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항)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부의 前 사전 심의하고, 그 이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위원회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2항)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

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 할 수 있다.

3항) 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의무)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항) 선관주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항)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항) 의사록 작성의무

위원회는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점검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점검을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0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1항)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12조 (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4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은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